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7조제2항 및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신규지정

연번	명칭	대표자	소재지
1	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	조영태	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

2.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: '23. 9. 1. ~ '28. 8. 31.(5년간)

3. 기타사항

-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기관 전문 인력 교육 이수 후(~'24.1) 인증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
-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담조직, 업무수행 체계, 상근 인증업무 인력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

유지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(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)
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9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(녹색건축과 ☎ 044-201-409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(기존 및 신규)

연 번	인증기관명	연락처	비 고
1	국토안전관리원	055-771-4822	기 지정
2	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	02-525-1025	기 지정
3	한국건설기술연구원	031-910-0782	기 지정
4	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	02-456-9442	기 지정
5	한국부동산원	1644-2828	기 지정
6	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	02-6973-9036	기 지정
7	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	042-860-3063	기 지정
8	한국환경건축연구원	02-6287-0873	기 지정
9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02-3415-8863	신규 지정